



| 구<br>분           | ① 요<br>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검 토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③ 적합<br>여부           | ④ 적정<br>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<br>견<br>기<br>업 | 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<br>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이 아니고,<br><br>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(23)<br><br>(Y), (N) | (28)<br><br>적<br><br>부<br><br>(N) |
|                  | ⑪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<br>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<br>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<br>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<br><br>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<br>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<br>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<br>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<br>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<br>외)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(24)<br><br>(Y), (N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⑫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<br>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(25)<br><br>(Y), (N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「조세특례제한<br>법」 제5조제1항(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<br>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<br>장 중견기업에 한함) | 직전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전 2년     | 직전 1년     | 평균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<br>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)<br><br>: 5천억원 미만<br><br>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만원 미만        | (    억원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    억원 ) | (    억원 ) | (    억원 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\*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「법인세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.

\*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"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별지 제51호서식)"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
-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,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.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.
  -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),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) 등
- ② 검토내용란의 ㉓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.
- ② 검토내용란의 ㉔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"적합" 또는 "부적합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(25)란은 ① 요건란 ㉓의 ① ~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"(Y)"에 "○"표시하며, ㉓의 ① ~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- ④ 적정여부의 (26)란은 ① 요건란의 ㉓·㉔·㉕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, ① 요건란의 ㉓ 요건(유예기간)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- ④ 적정여부의 (27)란은 ① 요건란 ㉓ 및 ㉔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- ④ 적정여부의 (28)란은 중소기업이 아닌[(26)에 "부(N)"로 기재] 기업으로서 ① 요건란의 ㉓, ㉔, 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     | 규모 기준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| C14  | 1,50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   |        |
| 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15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     | 800억원 이하 |        |
| 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| C17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| C21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4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24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3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5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28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27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6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7.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| A    | 평균매출액등<br>1,00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<br>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<br>(E36 제외) |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 |
| 8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9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0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      | C34           | 600억원 이하 |        |
| 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| C13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| M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| C16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<br>(임대업은 제외한다) | N<br>(N76 제외) |          |        |
| 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| C19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| Q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| R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2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S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| C25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| C26  | 41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| C29  | 42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30  | 43. 임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N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31  | 44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| D    | 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22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23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24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
## 작성 방법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    | 규모 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| 평균매출액등<br>120억원 이하 | 18. 농업,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  |
| 2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|                    | 19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|        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| C14  |                    | 20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        | 80억원 이하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| C15  |                    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 | C13          |         |
| 5. 코르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| C19  |                    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| C16          |        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 |                    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17          |         |
| 7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| C21  |                    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    |        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| C23  |                    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| C22          |        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| C24  |                    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| C27          |        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 |                    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31          |        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| C26  |                    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    |        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| C28  |                    | 29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   |        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| C29  |                    | 30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        |        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| C30  |                    | 31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    |         |
| 15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|                    |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 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| D    |                    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    | 50억원 이하 |
| 17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|                    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<br>(E36제외) | 평균매출액등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35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    | 30억원 이하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M            | 평균매출액등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   | N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| R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  | C34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I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Q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| S            | 10억원 이하 |

\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